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5. 10 선고 2023가단4623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중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5.

판 결 선 고 2024. 5. 10.

주 문

- 경남 창원군 C 대 433㎡ 중 1/5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3. 10. 3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원고는 피고의 오빠인 D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(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차전6305)을 신청하여 2021. 8. 23. 'D는 원고에게 9,182,953원 및 그 중 5,794,205원에 대하여 2021. 8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.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는 지급명령을 받았고, 2021. 11. 9.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.

D의 부친인 E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2018. 10. 17. 사망하였고,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D, 피고 등 5명이 있었으며, 상속재산으로는 경남 창원군 C 대 43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등이 있었다. 피고와 D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. 10. 31.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런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,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 이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,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장, 사단법인 F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

또한,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

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,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,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/5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.

피고는 ‘자신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D에게 수시로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므로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.’고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, 설령 D가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곧 다른 채권자의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결국 이 사건 토지 중 1/5 지분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, D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는 위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,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토지 중 1/5 지분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/5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경민